

I.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총평 및 향후 수험전략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1	(1) 문제유형분석 1) 조문과 판례(신판례 포함) ① 조문형 : 11문제(규칙 지문2개 출제) ② 판례형 : 4문제 ③ 조문·판례 결합형 : 5문제 2) 박스형과 4지선다형 ① 4지선다형 : 15문제 ② 박스형 : 5문제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편	수사의 기본이론	1	(2) 문제 출처 분석 1) 기존 기출영역(최신 기출영역 포함) ① 기존 기출 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출제 됨 ② 최신 타 직렬 기출문제의 최신 판례도 출제 됨 2)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최신 기출문제 반영) ① 기본서 : 출제는 기본서 영역을 벗어나지 않음 ② 기출문제집 : 기출문제집의 기출지문이 대부분 반복출제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2	
	대물적 강제처분	2	
3편	수사의 종결	1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공소 일반		
4편	공소의 제기	1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5편	소송의 주체	3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절차의 진행	2	
6편	증거법 서설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증거능력	1	
	증명력		
	재판 일반론		
7편	상소심절차	2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비상구제절차	1	
	특별절차	1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편	종합형 문제	2	(3) 최신판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최근 출제경향(타직렬 동일) (3) 향후 수험대책 ① 정확한 수험이해(출제영역 이해) ② 정확한 내용이해(출제영역에 대한 의미파악) ③ 조문과 판례(신판례포함)를 통한 형소법 최종정리 ④ 반복적 암기 (4) 향후 수험대비 일정계획 ① 수험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② 내용이해 : 강의 및 기출문제집 활용(9~11월) ③ 조문과 판례 : 조문과 판례 정리(11~12월) ④ 반복적 암기 : 출제영역 반복적 암기(12~2월)
총 평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中下 정도로 평가된다.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90점 정도는 확보했으리라 생각된다. 강의를 통해 중요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수험 및 내용)를 하고, 보충적으로 조문과 판례를 꼼꼼히 살핀 뒤 시험 임박해서는 최신판례로 보충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무료 해설강의 및 향후수험전략 일정

일시 · 장소	2012년 8월 30일(목) 16 : 40부터 - 대구 한국경찰학원 2012년 9월 5일(수) 17 : 00부터 - 부산 한겨레경찰학원
동영상 해설강의	우리샘 - www.woorissam.co.kr 고시가이드 - www.policecamp.co.kr
수험상담	용두샘의 以文會友 - www.cafe.daum.net/3slaw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자백보강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간이공판절차 ㉨ 영장실질심사 청구권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②

- 1)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 ㉠㉡㉢㉣
2)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 ㉤㉥㉦㉧

▶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형사절차와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 비교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
① 강제수사법정주의(헌법 §12①)	① 기피신청권(형소법 §18)
②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12①)	② 구속취소청구권(동법 §93)
③ 고문금지과 불이익진술거부권(헌법 §12②)	③ 보석청구권(동법 §94)
④ 영장주의(헌법 §12③, §16)	④ 증인신문권(동법 §161조의2)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12④)	⑤ 증거보전청구권(동법 §184)
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헌법 §12⑤1문)	⑥ 영장실질심사청구권(동법 §201)
⑦ 피체포·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구속 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헌법 §12⑤2문)	⑦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동법 §276)
⑧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헌법 §12⑥)	⑧ 간이공판절차(동법 §286조의2)
⑨ <u>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헌법 §12⑦)</u>	⑨ 증거신청권(동법 §294)
⑩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 §13①)	⑩ 이의신청권(동법 §296, §304)
⑪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①)	⑪ 최후진술권(동법 §303)
⑫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27②)	⑫ 변론재개신청권(동법 §305)
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③)	⑬ 증거재판주의(동법 §307)
⑭ <u>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27④)</u>	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동법 §308조의2)
⑮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27⑤)	⑮ 전문법칙(동법 §310조의2)
⑯ <u>형사보상청구권(헌법 §28)</u>	⑯ 상소권(동법 §338)
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37②)	⑰ 불이익변경금지(동법 §368)
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44)	⑱ 배상명령제도(소·촉·법)
⑲ 대통령의 형사상특권(헌법 §84)	
⑳ 법원의 조직과 권한(헌법 §101~108)	
㉑ 재판공개에 원칙(헌법 §109)	
㉒ 군사법원(헌법 §110)	
㉓ 헌법소원권(헌법 §111①)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 ③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해설 ④

④ X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 ① O 대법원 1985.3.12. 선고 85도190 판결
- ② O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3405 판결
- ③ O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판결

3.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④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해설 ③

- ③ ○ 제200조의4 제2항, 제3항
- ① X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의 일환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점,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 보장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 ②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또한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위와 같이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한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호의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④ X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15. 자 95모94 결정).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해설 ①

① X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 ② O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③ O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④ O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해설 ④

④ X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1항, 제4항).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고**(규칙 제96조의16 제2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3항).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문답 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검사와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허용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절차가 사실상 본안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특히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절차가 법관 면전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절차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장실질심사절차를 사실상 자백획득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신동운 287P).

- ① ○ 제201조의2 제1항, 제2항
- ② ○ 제201조의2 제2항
- ③ ○ 제201조의2 제7항

6.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해설 ②

② X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따라서 검사는 **진술을 반복할 우려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로 이 제도 도입 당시(1973년)에는 진술반복우려가 증인신문청구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반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비록 그 신문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 ① ○ 제184조 제1항
- ③ ○ 제184조 제3항
- ④ ○ 제184조 제4항

7.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 ㉠ ○ 제264조의2
- ㉡ ○ 제262조 제4항
- ㉢ X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항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항고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하는 재정신청(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 ㉣ X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국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262조의3 제1항),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개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2항). 따라서 반드시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급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④

- ④ X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 ① O 제9조
 ② O 제12조
 ③ O 제13조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해설 ②

- ② O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371 판결).
- ① 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5조의3 제3항).
- ③ X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 ④ X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에서 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10. 다음 각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대표변호인은 ()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개월로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개월 단위로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지만,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① 22 ② 23 ③ 24 ④ 25

해설 ③

- ▶ 숫자의 합은 : $3 + (2+2+2+3) + 6 + 3 + 3 = 24$
 ㉠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
 ㉡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제92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2항).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65조 제1항).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제465조 제2항).
 ㉣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제200조의3 제1항).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제6호).

11.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증거개시 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④ 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제266조의3 제6항).

- ① ○ 제266조의3 제1항
 ② ○ 제266조의3 제3항
 ③ ○ 제266조의4 제5항

12.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 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 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해설 ③

③ X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형법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 ① O 규칙 제15조 제2항
 ② O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④ O 제243조의2 제3항

13.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①

- ㉠ O 제358조
 ㉡ O 제360조 제1항
 ㉢ O 제361조의3 제2항
 ㉣ X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59조).
 ㉤ X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0조).
 ㉥ X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61조의2 제1항).
 ㉦ X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61조의3 제2항),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3항).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해설 ②

- ② X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2109 판결).
- ① O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③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 ④ O 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판결

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 ②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③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④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③

③ O 제250조

- ① 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판결).
- ② X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감경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4.24. 선고 77도2752 판결).
- ④ X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에 출석한 증인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②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甲의 법정 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 ③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정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 ① X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 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148조),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② O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898 판결
- ③ O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 ④ O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7.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③

- 1) 배심원 결격사유 : ㉠㉡㉢㉣
 2) 배심원 면제사유 : ㉤㉥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8. 상소의 포기·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 ① X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1조).
- ② O 제349조 단서
- ③ O 제350조
- ④ O 제353조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증거는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해설 ②

- ② 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도8529 판결).
- ① 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 ③ O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10.10.29. 자 2008제도11 전원합의체 결정).
- ④ O 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①

- ① 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따라서 구류에 처할 수는 없다.
- ② O 제454조
- ③ O 제457조
- ④ O 제455조

수험생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원했던 만큼 점수를 얻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의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은 끝이 아님을 아셨을 합니다.

_____ 필기를 통과한 수험생은 체력과 면접시험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걸어야 하고,

_____ 다시 내년을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빨리 털고 일어나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정쩡 발을 옮겨놓을 시간은 없다는 것을 꼭...알았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로써가 아니라 수험의 선배로써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뛰고자 하는데, 혹 방향을 못 잡겠거나, 가다가 길을 잃은 경우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테니 이문회우 박용두 강사를 찾아 보세요.

시험본다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주일 정도는 카페 - 이문회우(www.cafedaumnet/3slaw)에서

많은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수험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형사소송법 쌤, 박용두 쌤

<공지>

1. 기출문제집 출간 공지 : 2012년 경찰2차 문제까지 반영한 기출문제집이 9월 중순(하순)쯤 출간 예정입니다. 올해 모든 국가직(경찰7급 반영했구요), 경찰승진 반영했습니다. 가장 최근 경찰2차까지 모두 반영한 것이라 최신 기출문제집이라 할 수 있겠네요.

2 카톡 스터디 공지 : 카톡을 이용한 간단한 기출문제(출간될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예정임) 및 신판례 스터디를 구상 중입니다. 혹~좋은 의견 있음 카페에 글 남겨 주세요